

## KB자산운용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 안내

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.

### 1. 대상 펀드 및 변경 내용

#### - KB 밸류 초이스 30 증권 투자신탁(채권혼합)

| 구분    | 변경전  | 변경후   |
|-------|--|---|
| 신탁계약서 | <p><b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~②생략</b>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12. 생략</p>  | <p><b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①~②좌동</b>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12. 좌동</p> <p>(신설) <u>13. C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u></p> <p>(신설) <u>14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u></p> <p>(신설) <u>15. S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검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</u></p> |
|       | <p><b>제10조(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 ①</b>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전자증권법”이라 한다)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12. 생략</p> | <p><b>제10조(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 ①</b>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전자증권법”이라 한다)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12. 좌동</p> <p>(신설) <u>13. C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</u></p> <p>(신설) <u>14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</u></p> <p>(신설) <u>15. S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</u></p>  |
|       | <p>②~⑤생략</p>   | <p>②~⑤좌동</p>  |
|       | <p><b>제39조(보수) ①~②생략</b>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~ 12. 생략</p>   | <p><b>제39조(보수) ①~②좌동</b>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~ 12. 좌동</p>  |

|   |  |   |
|---|--|---|
|   |  | <p>(신설) 13. C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<br/>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3.8<br/>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7.2<br/>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<br/>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</p> <p>(신설) 14.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<br/>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3.8<br/>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3.6<br/>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<br/>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</p> <p>(신설) 15. S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<br/>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3.8<br/>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1.5<br/>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<br/>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</p> |
|   | <p><b>제40조(판매수수료) ①생략</b><br/>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집합투자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집합투자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~ 2. 생략</p> <p>3.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F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G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P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S-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C-W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해당사항 없음</p> <p>4. 생략</p> <p>③~⑥생략</p> | <p><b>제40조(판매수수료) ①좌동</b><br/>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집합투자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집합투자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~ 2. 좌동</p> <p>3.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F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G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P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S-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W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S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해당사항 없음</p> <p>4. 좌동</p> <p>③~⑥좌동</p>  |
|   | <p><b>제41조(환매수수료) ①생략</b><br/> ②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생략</p> <p>2. C-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P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S-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C-W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해당사항 없음</p> <p>③생략</p>  | <p><b>제41조(환매수수료) ①좌동</b><br/> ②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좌동</p> <p>2. C-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P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S-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W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, C-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S-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해당사항 없음</p> <p>③좌동</p>   |
| <p>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</p> |  |   |

- KB 와이즈 스타 부동산 투자신탁 제1호

- KB 와이즈 스타 부동산 투자신탁 제3호

| 구분    | 변경전                     | 변경후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투자설명서 | 부책임: 이정근                | 부책임: <u>김보형</u> |
|       | ※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포함 |                 |

2. 변경(예정)일: 2021년 10월 07일(목)